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3 관련)

1. 시설장비

장비명	기준
가.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다.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라. 증발가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마.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바. 입자상물질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사. 매연측정기	1조 이상

2. 기술인력

자격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차량기술사, 대기환경기술사, 자동차검사기사 이상, 자동차 정비기사 이상, 일반기계기사 이상, 건설기계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기사 이상, 전자기사 이상, 대기환경기사 이상 및 농업기계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2) 나목1)에 따른 기술자격 소지자 중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2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기환경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 자동차 정비기능사 이상, 전자기기기능사 이상 및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2) 1)에 따른 기술자격에 속하는 동일 또는 유사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명 이상

비고: 제2호의 기술인력은 가목 및 나목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